

●대법원 양형위원회 공고 제2011-1호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 및 제81조의12와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 3월 21일 의결된 「형법 개정 등에 따른 수정 양형기준」 및 「약취·유인, 사기, 절도, 공문서, 사문서, 공무집행방해, 식품·보건, 마약범죄 양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위 「형법 개정 등에 따른 수정 양형기준」은 관보에 게재된 날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며, 「약취·유인, 사기, 절도, 공문서, 사문서, 공무집행방해, 식품·보건,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2011년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2011년 4월 1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 약어표 ◆

- 마약관리법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성폭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유해물질법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 특가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특강법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특경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살인범죄 수정 양형기준

살인범죄의 양형기준은 살인(형법 제250조 제1항), 존속살해(형법 제250조 제2항), 강간등살인(형법 제301조의2, 성폭법 제9조 제1항), 강도살인(형법 제338조), 인질살해(형법 제324조의4), 약취·유인 미성년자 살해(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2호), 특가법상 보복살인(특가법 제5조의9 제1항), 위 각 범죄의 미수죄(형법 제254조, 제324조의5, 제342조, 성폭법 제14조, 특가법 제5조의2 제6항)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참작 동기 살인	3년 - 5년	4년 - 6년	5년 - 8년
2	보통 동기 살인	6년 - 10년	9년 - 13년	12년 - 17년
3	비난 동기 살인	9년 - 13년	12년 - 16년	15년 이상, 무기 이상
4	중대범죄 결합 살인	14년 - 18년	17년 - 22년	20년 이상, 무기 이상
5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18년 - 23년	22년 - 27년	25년 이상, 무기 이상

▷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 살인 범행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사체손괴 ○ 잔혹한 범행수법 ○ 존속인 피해자 ○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인 경우(4유형) ○ 강도강간범인 경우(4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미수	○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 특강(누범)

		○자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 양형 인자	행위	○소극 가담 ○피해자 유발(보통)	○사체유기
	행위자 /기타	○범행 후 구호 후송 ○상당 금액 공탁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4유형의 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 약취·유인 미성년자 살해, 인질살해에는 적용하지 않음) ○진지한 반성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명정상태에서 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성범죄 양형기준(수정, 2010. 7. 15. 공개)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

[유형의 정의]

1.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의 귀책사유 있는 살인

- 피해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장기간 가정폭력, 성폭행, 스토킹(stalking) 등 지속적인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한 경우
- 피해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수차례 실질적인 살해의 위협을 받은 경우(과잉방위는 별도로 특별감경인자로 고려하지 않음)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보통의 동기에 의한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거나, 제1, 3, 4, 5유형에 속하지 않는 살인범행을 의미한다.

■ 원한관계에 기인한 살인

- 애인의 변심 또는 관계청산 요구에 앙심을 품고 살인
- 피해자로부터 인간적 무시나 멸시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살인
- 말다툼, 몸싸움 등 시비 끝에 격분하여 살인

■ 가정불화로 인한 살인

- 의처증 또는 의부증으로 배우자 살해
- 배우자에 대한 불만 누적으로 배우자 살해

■ 채권채무관계에서 비롯된 불만으로 인한 살인

- 채무변제 불응을 이유로 살인
- 채무변제 독촉을 이유로 살인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3.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특가법상 보복살인(특가법 제5조의9 제1항)

- 고소·고발·진술·증언·자료제출에 대한 보복 목적의 살인
- 고소·고발·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살인

■ 금전, 불륜, 조직이익 목적 살인

- 재산적 탐욕에 기인한 살인(상속재산 또는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 경제적 대가 등 목적의 청부살인
- 불륜관계 유지를 위해 배우자 살해
- 조직폭력배 집단 간 세력 다툼에 기인한 살인

■ 다른 범죄 실행, 범죄 발각 방지 목적 살인

-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교도소 탈주를 위한 교도관 살해, 특정인의 납치를 위한 경호원 살해)
- 범행의 발각 또는 피해자의 신고를 우려하여 살인

■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무작위) 살인 또는 살해육의 발로·충족으로서 1인을 살해한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4.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중대범죄와 결합된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형법 제301조의2, 성폭법 제9조 제1항)
- 약취·유인 미성년자 살해(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2호)
- 인질살해(형법 제324조의4)
- 강도살인(형법 제338조)

5. 제5유형(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인명경시 성향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무작위) 살인으로서 2인 이상을 살해한 경우
- 살해육의 발로·충족으로서 2인 이상을 살해한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양형인자의 정의]

1.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피해자 유발

-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피해자에게도 일정한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며, 장기간에 걸친 피해자의 가정폭력 등과 같이 범행 이전부터 상당기간 동안 존재한 귀책사유를 유형 분류단계에서 이미 고려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고려할 수 없다.

3. 계획적 살인 범행

- 살인범행이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4.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 약취·유인 미성년자 살해(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 또는 정신 장애상태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5. 잔혹한 범행수법

- 고통의 강도와 시간적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방화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
 - 폭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살해한 경우
 - 살해 전 피해자의 신체 일부분을 고의로 손상한 경우
 - 칼이나 둔기 등 흉기를 사용하여 신체의 급소 등을 수십 차례 찌르거나 가격한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6.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인 경우

- 약취·유인의 목적이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살해 목적인 경우
 - 재물 취득 목적인 경우
 - 추행·간음·영리 목적인 경우
 - 취업사용 목적인 경우
 - 국외이송 목적인 경우

7.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8. 중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9.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유족이나 피해자(살인미수범죄의 경우)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유족이나 피해자와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10.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후회나 죄책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범행을 단순 부인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11.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할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살인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12.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알코올, 약물 등의 복용에 의하여 심신미약 상태가 야기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제4유형의 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 약취·유인 미성년자 살해, 인질살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3. 동종 전과

○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 존속살해 및 그 미수범죄, 특가법상 보복살인, 성범죄, 강도범죄, 약취·유인범죄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그 결과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살인미수범죄의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재범의 위험성 등	○ 계획적 살인 범행 ○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중지미수 ○ 피해자 유발(강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기타	○ 중한 상해 ○ 피해회복 없음	○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 참작 사유	재범의 위험성 등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위험한 물건 휴대 ○ 잔혹한 범행수법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자와 전혀 알지 못함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해자 유발(보통)
	기타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범행 후 구호 후송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에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성범죄 양형기준(수정, 2010. 7. 15. 공개)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3세 일반강제추행	1년6월 - 4년	2년 - 5년	3년 - 6년

	이상 대상 상해 /치상	(제1-1유형) 일반강간/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제1-2유형)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주거침입등 강간 /특수강간 (제1-3유형)	5년 - 8년	6년 - 9년	7년 - 11년
2	13세 미만 대상 상해 /치상	의제강제추행 /의제강간 (제2-1유형)	2년6월 - 4년	3년 - 6년	4년 - 8년
		강제추행 (제2-2유형)	3년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강제유사성교 (제2-3유형)	5년 - 8년	7년 - 10년	8년 - 12년
		강간 (제2-4유형)	7년 - 10년	9년 - 13년	11년 이상, 무기

◎ 성범죄 양형기준(수정, 2010. 7. 15. 공개) 중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형량기준표 및 양형인자표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강간치사 /강제추행치사	9년 - 12년	11년 - 14년	12년 이상, 무기

●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지회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 력 포함)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 외)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기본행위가 강제추행인 경우 ○소극 가담	
	행위자 /기타	○범행 후 구호 후송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 년 미만)

◎ 성범죄 양형기준(수정, 2010. 7. 15. 공개) 중 "[공통원칙]의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의 ①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그 결과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강도범죄 양형기준 중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형량기준표 및 양형인자표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강도치사	6년 - 11년	9년 - 13년	11년 이상, 무기

●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일반양형인자	행위	○소극 가담	○특수강도 범행
	행위자/기타	○범행 후 구호 후송 ○상당 금액 공탁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강도범죄 양형기준 중 "[공통원칙]의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의 ①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그 결과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범죄군별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뇌물, 강도, 횡령·배임, 위증, 무고범죄 양형기준 및 성범죄 양형기준(수정, 2010. 7. 15. 공개) 중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의 ③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약취·유인범죄 양형기준

약취·유인범죄의 양형기준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형법 제287조), 영리 등을 위한 약취·유인·매매 등(특가법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8조),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유인·매매(특가법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9조), 약취·유인·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특가법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92조), 상습범(특가법 제5조의2 제5항, 형법 제293조 제1항), 인질강요(형법 제324조의2), 인질상해·치상(형법 제324조의3), 인질치사(형법 제324조의4), 재물 등 취득 목적 약취·유인(특가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 살해 목적 약취·유인(특가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 약취·유인 후 재물 등 취

득(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1호), 약취·유인 후 폭행 등(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3호), 약취·유인 치사(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4호)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약취·유인(매매·수수·은닉·국외이송 포함)만 한 경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단순 약취·유인 등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년 - 4년
2	비난 목적 약취·유인 등	2년6월 - 5년	4년 - 6년	5년 - 8년
3	살해 목적 약취·유인	4년 - 7년	6년 - 9년	7년 - 10년

●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수수 또는 은닉만 한 경우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함)
일반 양형 인자	행위	○소극 가담 ○양육권이 없는 부모 또는 친족의 범행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2인 이상 공동 범행
	행위자 /기타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야기

2. 약취·유인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단순 약취·유인 등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7년
2	비난 목적 약취·유인 등	3년 - 6년	5년 - 8년	6년 - 10년
3	살해 목적 약취·유인	5년 - 8년	7년 - 10년	9년 - 14년

●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신체침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자수 ○처벌불원	
일반 양형 인자	행위	○소극 가담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 하여 범행한 경우 ○2인 이상 공동 범행
	행위자 /기타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 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야기

3. 약취·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취득한 경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재물 등 요구	4년 - 7년	5년 - 8년	7년 - 11년
2	재물 등 취득	6년 - 9년	8년 - 12년	10년 - 15년

● 인질강요(형법 제324조의2)는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피해자에게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취득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소극 가담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 하여 범행한 경우 ○2인 이상 공동 범행
	행위자 /기타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 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야기

4. 약취·유인 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약취·유인치사/인질치사	6년 - 11년	9년 - 13년	11년 이상, 무기

●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인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소극 가담	
	행위자 /기타	○범행 후 구호 후송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유형의 정의]

1. 약취·유인만 한 경우

가. 제1유형(단순 약취·유인 등) :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제2, 3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약취·유인·수수·은닉·국외이송의 경우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약취·유인	형법 제287조
형법 제287조의 약취·유인된 자의 수수·은닉	형법 제292조 제2항

나. 제2유형(비난 목적 약취·유인 등) :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 등의 경우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재물 취득 목적	특가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
추행·간음·영리 목적	특가법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8조 제1항
추업 사용 목적	특가법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8조 제2항
국외 이송 목적	특가법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9조 제1항
약취·유인·매매된 자 국외이송	특가법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9조 제2항
형법 제288조 또는 제289조의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자의 수수·은닉	특가법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92조 제1항
추행·간음·영리 목적, 형법 제287조의 약취·유인된 자의 수수·은닉	형법 제293조 제2항, 제292조 제2항
상습범	특가법 제5조의2 제5항, 형법 제293조 제1항

다. 제3유형(살해 목적 약취·유인) : 살해 목적 약취·유인의 경우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살해 목적	특가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

2. 약취·유인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가. 제1유형(단순 약취·유인 등) :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제2, 3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약취·유인의 경우

나. 제2유형(비난 목적 약취·유인 등) :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의 경우

- 재물 취득 목적인 경우
- 추행·간음·영리 목적인 경우
- 추업사용 목적인 경우
- 국외이송 목적인 경우

다. 제3유형(살해 목적 약취·유인) : 살해 목적 약취·유인의 경우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인질상해·치상	형법 제324조의3
약취·유인 후 폭행·상해·감금·유기·가혹행위	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3호

3. 약취·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취득한 경우

가. 제1유형(재물 등 요구)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요구	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1호

※ 인질강요(형법 제324조의2)는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나. 제2유형(재물 등 취득)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취득	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1호

4. 약취·유인 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약취·유인치사	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4호
인질치사	형법 제324조의4

[양형인자의 정의]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은 동의하였으나, 법정대리인 등의 보호감독권이 침해된 경우를 의미한다.

다.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약취·유인범죄의 실행을 목적으로 조직(범죄단체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아니함)을 구성하여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 분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라.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 학교(교정, 교사 포함), 어린이집, 보육원, 유치원 등 교육시설 또는 보호시설의 내부와 주변, 등하 곳길, 공동주택 내부의 계단, 승강기 등과 같이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 있는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마.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할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바. 양육권이 없는 부모 또는 친족의 범행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예컨대, 비양육자인 친부모가 피해자인 아이를 보고 싶어서 데려간 경우 등을 의미한다.

사.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 마약류 기타 약물을 투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인식 및 통제능력을 상실 또는 미약하게 한 다음 범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아. 2인 이상 공동 범행

- 2인 이상 공동하여 저지른 범행으로서,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에 이르지 않은 경

우를 의미한다.

자. 상당 금액 공탁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를 의미한다.

차. 합의시도 중 피해 야기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범행사실을 공개하거나 공개할 의사를 표명하여 압력을 가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카. 신체침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폭행·상해·치상의 경우 :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이거나, 고문의 방법을 사용한 경우,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감금의 경우 : 감금 기간이 약 10일 이상인 경우
 - 유기의 경우 : 발견이 곤란한 장소 또는 환경이 매우 열악하거나 위험한 장소에 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 가혹행위의 경우 :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경우, 피해자에게 강제로 노역을 시킨 경우, 피해자를 24시간 이상 잠재우지 않은 경우, 피해자에게 24시간 이상 고의로 음식을 주지 않은 경우,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타.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범행 과정에 피고인이 예상치 못한 요인이 개입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파.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인 경우

- 약취·유인의 목적이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살해 목적인 경우
 - 재물 취득 목적인 경우
 - 추행·간음·영리 목적인 경우
 - 취업사용 목적인 경우
 - 국외이송 목적인 경우

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거.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후회나 죄책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범행을 단순 부인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그 결과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 범행 • 반복적 범행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 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인 경우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 신체침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양육권이 없는 부모 또는 친족의 범행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우발적 범행 • 수수 또는 은닉만 한 경우 • 자수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이 고령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범행 후 구호 호송 • 상당 금액 공탁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 범행
 -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 약취·유인범죄의 실행을 목적으로 조직(범죄단체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아니함)을 구성하여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 분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경우

- ▷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
-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인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반복적 범행

- 범행 내용, 처벌 전력 및 경합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우발적 범행

-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등 범행의 계획 또는 사전준비가 없고, 범행의사 없이 다른 목적으로 피해자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범행의사를 가지고 저지른 범행을 의미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 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사기범죄 양형기준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은 사기(형법 제347조), 컴퓨터 등 사용사기(제347조의2), 준사기(제348조), 상습사기(제351조. 다만,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특정법상 사기(특경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일반사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 1년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0월 - 2년6월	1년 - 4년	2년6월 - 6년
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6월 - 4년	3년 - 6년	4년 - 7년
4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3년 - 6년	5년 - 8년	6년 - 9년
5	300억 원 이상	5년 - 9년	6년 - 10년	8년 - 1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차에서 범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 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가담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
	행위자 /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2. 조직적 사기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	2년6월 - 4년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년6월 - 3년	2년 - 5년	4년 - 7년
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2년 - 5년	4년 - 7년	6년 - 9년
4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1년
5	300억 원 이상	6년 - 10년	8년 - 13년	11년 이상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단순 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가담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
	행위자 /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유형의 정의]

1. 일반사기

- 제1유형 :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이득액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의미한다(이하 같음).
- 제2유형 :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제3유형 :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제4유형 :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제5유형 :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2. 조직적 사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말한다(예를 들면, 전화금융사기단의 전화금융사기, 사기도박단의 사기도박, 보험사기단의 보험사기, 토지사기단의 토지사기, 조직적인 국가보조금사기, 기획 또는 활동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자의 다단계사기 등).
- 제1유형 내지 제5유형의 정의는 일반사기의 그것과 동일하다.

[양형인자의 정의]

가.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편취한 경우(원래 보조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으나 사정 변경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였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보조금을 계속 교부받은 경우, 지속적인 금전거래 중간에 사업상 생긴 문제를 고지하지 않고 계속 금전거래를 한 경우 등 사건에서 문제가 된 거래행위의 초기에는 기망행위가 없었으나 나중에 기망행위가 있게 된 경우,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의 기망행위를 한 경우 등)
 - 소극적인 기망행위로 편취한 경우(피해자의 착오상태에 편승하여 기망행위를 한 경우 등)
 -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경우
 - 기망의 내용이 실제적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손해액의 약 1/3 이하만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된 경우를 의미한다.

다.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가 향후의 부당한 이득을 노리거나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경우
 - 불법적인 자금으로 운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큰 규모의 이득을 노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재물을 교부한 경우
 - 피해자의 비합법적 이윤추구 의도나 동기가 범행을 야기하거나 용이하게 한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피고인이 예견하고 있었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 회사가 자금경색으로 파산하게 하거나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하게 한 경우

- 피해자 회사의 신뢰추락으로 주가가 폭락하게 한 경우
- 연쇄부도를 야기한 경우
- 피해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게 한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마.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금융, 증권, 무역, 회계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업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장부조작,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사기범죄를 저지름에 있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바.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죄의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여 피해회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사. 내부비리고발

- 구조적 비리에 가담해 온 피고인이 범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에서 내부비리를 고발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된 경우를 의미한다.

아.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손해액의 약 2/3 이상이 피해회복되거나 회복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기범행인 경우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도박 등 불법적인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경우
 - 다른 범행을 실행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
 - 피해자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한 의도에서 그 재산을 편취한 경우
 - 조직폭력 집단 사이의 세력 다툼에서 우세를 차지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편취한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차. 단순 가담

-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조직적인 사기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동종경합범 처리방법

-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또는 조직적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처리방법을 적용한다.
- ①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경합범 또는 조직적 사기 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

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 ②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 일반사기 범죄와 조직적 사기 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아래의 ‘이종경합범 처리방법’의 예에 따른다.

※ 일반사기 범행과 조직적 사기 범행이 상습사기의 일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사기 범죄와 조직적 사기 범죄 중 하나를 선택한 뒤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을 적용한다.

4. 이종경합범 처리방법

○ 이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다만,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또는 조직적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위 각 동종경합범에 대한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각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위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미합의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단순 가담(조직적 사기 유형)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처벌불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회복 노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참작 동기 • 피고인이 고령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회복, 진지한 피해회복 노력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으나,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절도범죄 양형기준

절도범죄의 양형기준은 절도(형법 제329조), 야간주거침입절도(제330조), 특수절도(제331조), 상습·누범절도(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 제6항), 임산물 등 절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제3항, 산림보호법 제54조 제1항, 특가법 제9조 제1항, 제2항), 산림문화자산 절도(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문화재 절도(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방치물 등 절도	- 6월	4월 - 8월	6월 - 1년
2	일반절도	4월 - 10월	6월 - 1년6월	10월 - 2년
3	대인절도	6월 - 1년	8월 - 2년	1년 - 3년
4	침입절도	8월 - 1년6월	1년 - 2년6월	1년6월 - 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	------

특별 양형 인자	행위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소극 가담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산림보호법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자 /기타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2.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가치가 높은 재산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	2년6월 - 4년
2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6년

● 2유형 중 특가범 제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	○흉기를 휴대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소극 가담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행위자 /기타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3. 상습·누범절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상습·누범절도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6년
2	공동상습·누범절도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7년

● 특가범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범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 처벌불원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생계형 범죄 ○ 피해 경미 ○ 소극 가담	○ 흉기를 휴대한 경우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후 침입
	행위자 /기타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유형의 정의]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가.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거의 없거나 낮고, 점유의 정도가 느슨하거나 약하며, 재물의 가치가 경미하고, 점유 침해 또는 배제의 정도가 약한 절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옥외 방치물 취거
- 상점에 진열된 상품의 취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제2유형(일반절도)

○ 제1유형, 제3유형, 제4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절도를 의미한다.

다. 제3유형(대인절도)

○ 타인이 그 신체 범위 내에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일정한 수법을 이용하여 직접 취거하는 절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날치기 : 타인의 소지품을 썩싸게 채어 달아나는 방법으로 절취함
- 소매치기 :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타인 몰래 그 소지품을 절취함
- 부축빼기(아리랑치기) : 길거리에 쓰러진 취객을 대상으로 그 소지품을 절취함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제4유형(침입절도)

○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행하는 절도를 의미한다.

※ 야간이 아닌 경우,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제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2.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가. 제1유형(가치가 높은 재산)

○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재산에 대한 절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2항의 절도
- 금융기관(특경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현금, 유가증권 또는 귀금속 등에 대한 절도
- 단기에 가격이 급등하거나 품귀현상이 발생한 물건에 대한 절도
- 중요한 산업기술 또는 기업비밀 관련 자료에 대한 절도

나.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에 대한 절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

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항의 절도
- 임산물 절도 중 특가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절도
- 송유관(송유관 안전관리법이 규정하는 송유관) 내 석유 절도
- 임산물 절도 중 특가법 제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절도
- 유출될 경우 해당 기업의 흥망 또는 해당 분야의 판도가 바뀔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산업기술 또는 기업비밀 관련 자료에 대한 절도

3. 상습·누범절도

가.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의 형으로 처벌하는 경우
-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의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경우

나. 제2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특가법 제5조의4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2항의 형으로 처벌하는 경우
-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2항의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경우

[양형인자의 정의]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생계형 범죄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궁핍한 가계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경우
 - 치료비, 학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제4유형)

- 제4유형(침입절도) 중 ‘실내 주거공간(피해자가 계속적·반복적·일상적으로 거주하고, 피해자 또는 그 가족과 무관한 외부인이 용이하게 출입할 수 없는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하여 절도를 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라.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절도범죄의 실행을 목적으로 조직(범죄단체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아니함)을 구성하여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 분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마.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 ‘개인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는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고가의 골동품, 귀금속, 고액의 유가증권, 고액의 현금 등을 절취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피

해(피해자의 피해품에 대한 주관적 가치, 파생적 손해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입힌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는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절도로 인하여 상당히 중한 사회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바.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할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사.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 2인 이상 합동하여 저지른 범행으로서,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에 이르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산림보호법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 지정산림문화자산을 절취한 경우

○ 보호수를 절취하거나 산림보호구역에서 산물을 절취한 경우

자.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

○ 특별재산이 일반적으로 소재하는 장소와 무관한 곳에서 특별재산에 대한 인식 또는 절취 목적이 없는 절도범행의 기회에 우연히 특별재산에 해당하는 물품을 절취하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차.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품의 물색 또는 피해품에 대한 점유의 취득·운반 등에 있어서 단순히 감시소홀 등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수법이나 기술 등을 이용한 경우

- 일반적으로는 쉽게 이동할 수 없는 피해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도구를 사용한 경우

- 절도범죄의 실행을 목적으로 조직(범죄단체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아니함)을 구성하여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 분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경우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p>참작 사유</p>	<p>○반복적 범행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함 ○피해회복 없음</p>	<p>○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생계형 범죄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p>
<p>일반 참작 사유</p>	<p>○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진지한 반성 없음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p>	<p>○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수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p>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에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반복적 범행
 - 범행 내용, 처벌 전력 및 경합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공문서범죄 양형기준

공문서범죄의 양형기준은 공문서등 위조·변조(형법 제225조), 자격모용 공문서등 작성(제226조), 허위공문서 작성·변개(제227조), 공전자기록위작·변작(제227조의2),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제228조 제1항), 위 문서 등의 행사(제229조), 공문서등 부정행사(제230조)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의 경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비영업적·비조직적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영업적 또는 조직적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위·변조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2유형)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동종 누범(사문서범죄 포함)
일반 양형 인자	행위	○소극 가담 ○변조부분이 문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또는 동 행사의 경우	○전문 위·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판결문,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전문 위·변조장비(컬러프린트, 스캐너 등)를 사용한 경우
	행위자 /기타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사문서범죄 포함)

2. 허위공문서 작성·변개의 경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소극적 목적	- 8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2	적극적 목적	6월 - 1년6월	8월 - 2년	1년6월 - 2년6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경미한 경우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5년 이내 동종 전과(사문서범죄 포함) 또는 징계전력 ○이득의 은폐 또는 피해회복의 방해
일반 양형 인자	행위	○소극 가담	○허위공문서 작성·변개를 행한 자가 당해 문서를 행사한 경우
	행위자 /기타	○장기간 특별한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표창 수상 등 고려) ○진지한 반성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사문서범죄 포함)

3. 공문서 등 부정행사의 경우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공문서 등 부정행사	- 6월	4월 - 10월	6월 - 1년6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생계 유지를 위한 의도	○범행 목적을 달성한 경우(경미하지 않은 불법적 이득일 것)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부정행사한 공문서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우(별도 범죄가 되는 경우 제외)
	행위자 /기타	○형사처벌 전력 없음 ○국외추방이 예상되는 경우 ○진지한 반성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사문서범죄 포함)

[유형의 정의]

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의 경우

가.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비영업적·비조직적 위조·변조행위 등

- 제2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위조·변조행위 등

나.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 영업적 또는 조직적 위조·변조행위 등

- 영업적 또는 조직적이라 함은, 위조·변조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우두머리·알선책·전달책 등의 조직을 갖춘 경우를 의미함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공문서등 위조·변조 및 동 행사	형법 제225조, 제229조
자격모용 공문서등 작성 및 동 행사	형법 제226조, 제229조
공전자기록 위작·변작 및 동 행사	형법 제227조의2, 제229조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및 동 행사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2. 허위공문서 작성·변개의 경우

가. 제1유형(소극적 목적) : 직무상 편의, 편법적 직무수행, 직무상 과실 은폐 등 소극적 목적에 따른 행위

- 현지 확인 없이 그에 관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 보조자가 행한 행위를 감독자가 직접 담당한 것으로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 직무상 과실 등을 은폐하기 위한 경우

나. 제2유형(적극적 목적) : 이익을 취득하게 할 적극적 목적에 따른 행위

- 허위 수사·조사 서류 작성
- 피감독자에 대한 편의 제공
- 이익 획득 또는 의도로 허위공문서 작성
-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및 동 행사	형법 제227조, 제229조

3. 공문서 등 부정행사의 경우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공문서 등 부정행사	형법 제230조

[양형인자의 정의]

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의 경우

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범행동기가 단순한 호기심 또는 과시 목적인 경우
- 불법적 이득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경미한 불법적 이득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범행을 통해 의도한 목적을 최종적으로 달성하지 못하였고,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사회적·경제적 손해가 궁극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 위·변조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 피고인이 조직적 범죄에 있어서 조직의 중요한 지위에 있는 실질적인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기술자, 조직의 중간 간부급 이상의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인 경우를 의미한다.

라.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해가 야기된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대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거나, 대규모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질서를 교란하여 그 손해가 중대하고 심각한 경우를 의미한다.

마.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할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바. 변조부분이 문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

○ 중요한 법률관계에 관한 부분이 아닌 변조행위를 의미한다(예를 들어, 권리의 소멸과 관련되지 아니한 단순한 날짜 변조 등).

사. 전문 위·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 피고인은 전문 위·변조범 내지 위·변조단의 구성원이 아니나, 전문적인 위·변조범 내지 알선책 등 위·변조단의 구성원에게 의뢰하여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를 의미한다(예를 들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위·변조전문가에게 대가를 주고 위·변조를 의뢰하거나 위·변조단의 알선책을 통해 위·변조를 의뢰한 경우).

아. 판결문,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 위·변조의 대상이 된 문서가 판결문, 여권, 중요 지위에 관한 신분증명서, 특허증, 인감증명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크고 중요한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인 경우를 의미한다(다만, 위·변조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해가 야기된 경우에 해당하면 따로 일반양형인자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2. 허위공문서 작성·변개의 경우

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범행동기가 단순한 호기심 또는 과시 목적인 경우
- 불법적 이득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경미한 불법적 이득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
- 종전의 담당자, 주위의 유사업무 담당자들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계속되어 온 공무수행방식을 당연히 따른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경우

○ 외부 범죄조직의 조직적 범행에 가담하여 허위공문서 작성·변개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다.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수사기밀의 누설로 인하여 심각한 수사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경우
- 무고한 사람이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허위공문서로 인하여 행정조치나 인허가가 이루어져 그로 인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3. 공문서 등 부정행사의 경우

가.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한 경우

○ 공문서 부정행사를 통하여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함으로써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공문서 부정행사를 통하여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한 경우에는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공무원자격사칭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나. 부정행사한 공문서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우(별도 범죄가 되는 경우 제외)

○ 부정행사의 목적이 된 공문서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중 취득행위가 별도의 범죄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친족상도례, 피해자의 불특정 등)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공문서 위·변조,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되거나 허위작성된 문서 등을 행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5년 이내) 또는 동종 징계전력 ○ 판결문,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 ○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 ○ 영업적 또는 조직적 범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하거나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경미한 경우 ○ 현저한 개선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피고인이 고령 ○ 진지한 반성 ○ 장기간 특별한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허위공문서 작성·변개 유형)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사문서범죄 양형기준

사문서범죄의 양형기준은 사문서등 위조·변조(형법 제231조), 자격모용 사문서등 작성(제232조), 사전자기록위작·변작(제232조의2), 허위진단서등 작성(제233조), 위 문서 등의 행사(제234조)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사문서 위조·변조 등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사문서 위조·변조 등		- 1년	6월 - 2년	1년 - 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변조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종 누범(공문서범죄 포함)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극 가담 ○변조부분이 문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경미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 위·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전문 위·변조장비(컬러프린터, 스캐너 등)를 사용한 경우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공문서범죄 포함) 	

2. 허위진단서 등 작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소극적 동기	- 8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2	적극적 동기	6월 - 1년6월	8월 - 2년	1년6월 - 2년6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경미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 ○영업적 또는 조직적 범행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년 이내 동종 전과(공문서범죄 포함) ○이득의 은폐 또는 피해회복의 방해 	
일반 양형 인자	행위	○소극 가담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자가 당해 진단서를 행사한 경우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공문서범죄 포함)	

[유형의 정의]

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 구성 요 건	적 용 법 조
사문서등 위조·변조 및 동 행사	형법 제231조, 제234조
자격모용 사문서등 작성 및 동 행사	형법 제232조, 제234조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사전자기기록위작·변작 및 동 행사	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

2. 허위진단서 등 작성

가. 제1유형(소극적 동기) : 제2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아래와 같이 자신이나 제3자의 업무상 편의, 편법적인 업무수행 등 소극적 동기에 따른 행위인 경우

- 보험처리과정에서 실수로 진단서 작성을 누락하거나 분실하였다가 이를 같은 내용으로 허위로 작성하여 끼워 넣은 경우와 같이 단순히 업무상 편의를 위한 경우
- 실제 환자를 보고 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사진이나 영상, 통화 등을 근거로 진단서를 발급한 경우, 환자나 보험금 청구인의 진단서가 필요한데 진단서 확보에 시간이 걸리는 등의 문제가 있어 임의로 작성한 경우 등 편법적인 방법을 도모한 경우

나. 제2유형(적극적 동기) : 적극적으로, 자기나 제3자의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이득을 취할 의도 아래 이루어진 행위인 경우

- 보험금 편취 목적, 병역회피 목적, 장애인증 발급을 통한 장애인 자격취득 목적, 장기요양급여 대상자격 취득 목적 등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허위진단서등 작성 및 동 행사	형법 제233조, 제234조

[양형인자의 정의]

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범행동기가 단순한 호기심 또는 과시 목적인 경우
- 불법적 이득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경미한 불법적 이득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범행을 통해 의도한 목적을 최종적으로 달성하지 못하였고,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궁극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 위·변조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 피고인이 조직적 범죄에 있어서 조직의 중요한 지위에 있는 실질적인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조기술자와 조직의 중간 간부급 이상의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인 경우를 의미한다.

라.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대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거나, 대규모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질서를 교란하여 그 피해가 중대하고 심각한 경우를 의미한다.

마.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할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바. 변조부분이 문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

- 중요한 법률관계에 관한 부분이 아닌 변조행위를 의미한다(예를 들어, 권리의 소멸과 관련되지 아니한 단순한 날짜 변조 등).

사. 전문 위·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 피고인은 전문 위·변조범 내지 위·변조단의 구성원이 아니나 전문적인 위·변조범 내지 알선책 등 위·변조단의 구성원에게 의뢰하여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를 의미한다(예를 들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위·변조전문가에게 대가를 주고 위·변조를 의뢰하거나 위·변조단의 알선책 등을 통해 위·변조를 의뢰한 경우).

아. 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조·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 위·변조의 대상이 된 문서가 처분문서, 증거로 제출되는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크고 중요한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인 경우를 의미한다(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에 해당하면 따로 일반양형인자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사문서 위·변조, 허위진단서 작성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되거나 허위작성된 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집행유예 기준]

구 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 영업적 또는 조직적 범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현저한 개선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피고인이 고령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양형기준은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6조 제1항), 직무강요(제136조 제2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제137조), 공용물무효·과괴(제141조 제1항, 제2항), 특수공무방해 및 특수공무방해 치사상(제144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공무집행방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8월	6월 - 1년4월	1년 - 4년
2	위계공무집행방해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계획적 범행 ○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1유형,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2. 공용물무효·과과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용물무효	- 8월	6월 - 1년6월	1년 - 4년
2	공용물과과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5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무효·과과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중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중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소극 가담	○계획적 범행 ○중하지 않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행위자 /기타	○처벌불원(중하지 않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무효·과과된 물건이 피해회복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특수공무방해치사상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6년
2	특수공무방해치사	3년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2유형)	○중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소극 가담	○기본범죄가 계획적 범행인 경우
	행위자 /기타	○범행 후 구호 후송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유형의 정의]

1. 공무집행방해

가.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 구성 요 건	적 용 법 조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	형법 제136조 제2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범위를 범한 경우	형법 제144조 제1항

나.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	형법 제137조
2. 공용물무효·과과	
가. 제1유형(공용물무효)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	형법 제141조 제1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범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144조 제1항
나. 제2유형(공용물과과)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	형법 제141조 제2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범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144조 제1항
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가.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무효·과과죄를 범한 자가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함	형법 제144조 제2항
나. 제2유형(특수공무방해치사)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무효·과과죄를 범한 자가 공무원을 사망에 이르게 함	형법 제144조 제2항
[양형인자의 정의]	
가.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 공무집행이 적법한 권한 및 법률상 방식을 갖추긴 하였으나, 공무집행의 방법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거나 공무원의 언행이 피고인을 부적절하게 자극한 경우를 의미한다.	
나.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다.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공무방해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공무수행의 지장 또는 마비가 상당한 정도 또는 기간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라.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 범행시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 3회 이상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마.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 역할만 담당할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바. 계획적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사.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무효 또는 파괴된 공용물의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경미하여 원상회복 또는 수리에 큰 비용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아.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범행 과정에 피고인이 예상치 못한 요인이 개입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계획적 범행 또는 반복적 범행 ○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회복 노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

식품·보건범죄의 양형기준은 다음의 범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¹⁾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의3, 제35조 제1호 내지 제3호²⁾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53조, 제53조의3 제1호³⁾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2호⁴⁾, 제3호⁵⁾, 제7호⁶⁾, 제2항 제1호⁷⁾, 제14호⁸⁾
- 식품위생법 제93조 제1항⁹⁾, 제2항¹⁰⁾, 제94조 제1호¹¹⁾, 제2호¹²⁾, 제95조 제1호(같은 법 제7조 제4항¹³⁾, 제9조 제4항¹⁴⁾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 같은 법 제8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함), 제97조 제1호[같은 법 제10조 제2항(같은 법 제88조¹⁵⁾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¹⁶⁾, 제13조 제1항¹⁷⁾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함]

- 1) 농수산물 등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허위표시 등 행위
- 2) 지리적표시품에 관한 허위표시(제1호), 지리적표시품·표준규격품·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력추적관리농산물과 그렇지 않은 농산물과의 혼합판매 등(제2호), 표준규격품·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력추적관리농산물에 관한 허위표시(제3호)
- 3) 표준규격품·품질인증품·이력추적관리품·친환경수산물인증품·지리적표시품에 관한 허위표시 또는 혼합판매 등
- 4) 기립불능의 가축을 도축하는 행위
- 5) 가축에 물 먹이기 등 행위
- 6) 썩은 것, 유독물질이 들어있는 것, 병원성미생물에 오염된 것 등 판매
- 7) 축산물의 가공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 또는 유통하는 행위
- 8)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등에 허위 표시 또는 광고(젓소를 육우로 표시하는 행위 등)하는 행위
- 9) 광우병, 탄저병, 조류독감 등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가공·조리하는 행위
- 10) 마황, 부자, 천오 등의 원료를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가공·조리하는 행위
- 11) 위해식품 등 판매행위, 병든 동물 고기 등 판매행위, 미고시 화학적 합성물 등 판매행위
- 12) 유독기구 판매
- 13) 식약청장이 정한 식품 등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는 행위
- 14) 식약청장이 정한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행위
- 15) 집단급식소의 경우에 관련 규정을 준용
- 16) 식품, 식품첨가물,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에 관한 기준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 17) 원산지 표시, 식품이력추적관리표시 등에 관한 과대 표시 또는 광고, 의약품과의 혼동우려 표시 행위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 제44조 제4호18), 제6호19), 제7호20)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²¹⁾, 제2항²²⁾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함. 같은 법 제66조²³⁾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제94조 제1항 제9호(같은 법 제62조 제1 내지 7호, 제11호²⁴⁾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 같은 법 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 화장품법 제28조 제1항 제3호(같은 법 제13조 제2 내지 7호²⁵⁾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 한함), 제4호²⁶⁾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식품위생법 제6조, 제7조 제4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와 이미 허가 또는 신고된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위조·변조, 그 정을 알고 판매·취득·알선한 경우에 한함), 제3조 제1항(약사법 제62조 제2호에 위반한 경우와 이미 허가된 의약품 또는 화장품과 유사하게 위조·변조, 그 정을 알고 판매·취득·알선한 경우에 한함), 제5조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같은 법 제27조 제1항²⁷⁾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함)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허위표시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중소규모 유형 (5,000만 원 미만)	- 8월	4월 - 1년	10월 - 1년6월
2	일반 유형	4월 - 1년	10월 - 2년	1년6월 - 3년6월
3	대규모 유형 (5억 원 초과)	8월 - 2년	1년6월 - 3년	2년 - 4년6월

구분	감경인자	가중인자
----	------	------

- 18)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성분, 품질, 이력관리 등에 관한 허위·과대 표시 또는 광고, 의약품과의 혼동우려 표시 행위
- 19)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라는 명칭 또는 그와 유사한 내용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 20) 식약청장이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운반·보존 또는 진열하는 행위, 용기·포장에 관한 표시기준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판매,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혼동할 유사표시 등 행위
- 21) 용기·포장·첨부문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된 의약품이나 위조된 의약품의 판매 행위
- 22) 의약품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허위표시 또는 광고 금지 행위
- 23) 의약외품의 경우에 관련 규정을 준용
- 24) 대한약전에 실린 의약품으로서 성상·성능 또는 품질이 대한약전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의약품, 제31조 제2항·제3항과 제41조 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의약품으로서 그 성분 또는 분량(유효 성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본질 또는 제조 방법의 요지)이 허가 또는 신고된 내용과 다른 의약품, 제52조 제1항에 따라 기준이 정하여진 의약품으로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한 의약품, 전부 또는 일부가 불결한 물질 또는 변질이나 변하여 썩은 물질로 된 의약품, 병원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 이물질이 섞였거나 부착된 의약품, 식약청장이 정한 타르색소와 다른 타르색소가 사용된 의약품, 국민보건에 위해를 주었거나 줄 염려가 있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 또는 진열하는 행위
- 2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기준이 정하여진 화장품으로서 그 규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전부 또는 일부가 변질되거나 변패한 물질로 된 화장품, 병원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화장품, 이물이 혼입되었거나 부착된 화장품, 식약청장이 정한 배합금지원료가 함유되었거나 배합허용한도를 초과하여 원료를 함유한 화장품, 식약청장이 정하는 타르색소 외의 타르색소가 사용된 화장품의 판매 행위
- 26) 의학적 효능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기재 표시 화장품 판매 행위
- 27)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 양형 인자	행위 인자	○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 원산지 허위표시나 가격에 대한 부정행위가 아닌 경우 ○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	○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 실제 시중가격이 정상제품의 시중가격과 큰 차이가 있는 경우 ○ 의약품·화장품에 해당하는 경우 ○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행위자 /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고발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인자	○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액수가 크지 않은 경우 ○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TV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경우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행위자 /기타	○ 적발 후 바로 폐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2.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8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년 - 4년
2	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1년 - 2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3	특정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한 식품 제조 등	1년6월 - 3년	2년 - 4년6월	4년 - 7년
4	현저히 유해한 식품 등의 판매 등	2년6월 - 4년	3년6월 - 6년	5년 - 8년
5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4년 - 7년	5년 - 8년	7년 - 10년

구분		감경인자	가중인자
특별 양형 인자	행위 인자	○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	○ 중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거나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허위서류나 위조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 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1억 원 이상 또는 의약품 등의 소매가격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 유아·어린이용 식품 등인 경우
	행위자 /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고발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인자	○ 유해 식품 등의 제조나 유통 과정에서 중요 역할을 담당하지 않고 단순히 운반·보존·진열 행위만 한 경우 ○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상해가 발생한 경우(상해가 중하거나, 위험성이 매우 높거나,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제외) ○ 의약품인 경우(1, 4, 5유형) ○ 식품위생법 제93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2유형)
	행위자 /기타	○ 적발 후 바로 폐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 피해자측의 처벌불원(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	------------------------	--

3. 부정의료행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	2년6월 - 4년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2년6월 - 5년	4년 - 7년	5년 - 8년

구분		감경인자	가중인자
특별양형인자	행위인자	○현대 의학상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환자측의 적극적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범행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중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거나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큰 경우(2유형)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을 사칭하는 등 환자측을 기망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인자	○환자측의 사전 승낙이 있었던 경우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행위자/기타	○환자측의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유형의 정의]

1. 허위표시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법정형
(i)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ii)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iii)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가 다음 각 행위를 한 경우 (i)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ii)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판매·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여 보관·진열하는 행위 (iii)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판매·제공하는 행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i)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의3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법정형
(ii)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iii)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한 농산물에 다른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		
(i)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ii)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iii)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를 한 수산물에 다른 수산물을 혼합하는 행위	수산물품질관리법 제53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i) 가축에게 강제로 물을 먹이거나 식육에 물을 주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리는 행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3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i)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포장의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을 그 기준에 맞는 표시 없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 (집단급식소의 경우 관련 규정을 준용함) (ii)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원산지 표시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한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 과대포장.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같은 법 제10조 제2항(같은 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i)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한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ii)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라는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시·광고 (iii) 표시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유사표시 금지 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6호, 제7호(같은 법 제25조,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i)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포장·용기·선진물 및 관련 서류에 지리적표시품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 (ii)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또는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또는 지리적표시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 (iii)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이 아닌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5조 제1호 내지 제3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i) 표준규격품·품질인증품·이력추적관리품·친환경수산물인증품 또는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수산물·수산가공품에 표준규격의 표시, 품질인증의 표시,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표시, 친환경수산물인증의 표시, 지리적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등 허위표시 및 이를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	수산물품질관리법 제53조의3 제1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i) 축산물의 명칭·제조방법·성분·영양가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4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i) 의약품의 용기, 포장, 첨부서류에 필수적 기재사항	약사법 제93조 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법정형
<p>이 미비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p> <p>(ii)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이와 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p> <p>(iii) 의약외품의 경우에 관련 규정을 준용함</p>	1항 제10호[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단, '위조 의약품' 판매 등의 경우는 제외함),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함. 같은 법 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p>(i)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게 기재·표시된化粧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p>	化粧품법 제28조 제1항 제4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2. 유해 식품·의약품·化粧품

[제1유형]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법정형
<p>(i) 식약청 고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p> <p>(ii) 식약청 고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p> <p>(iii) 집단급식소의 경우 관련규정을 준용함</p>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같은 법 제7조 제4항, 제9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 같은 법 제8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p>(i) 식약청 고시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제조·수입·사용·저장·운반·보존·진열</p> <p>(ii)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배합·혼합비율·함량이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그러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판매 또는 진열</p>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7호(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p>(i) 농수산부장관이 고시한 가공기준이나 성분규격에 맞지 아니한 가축 또는 판매 목적 수입 축산물의 도살·처리, 집유 및 가공 등</p>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p>(i)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경우</p> <p>(ii) 의약외품의 경우에 관련 규정을 준용함</p>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중 '위조 의약품'의 경우에 한하며, 같은 법 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p>다음 각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 또는 진열</p> <p>(i) 대한약전에 실린 의약품으로서 성상·성능 또는 품질이 대한약전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의약품</p> <p>(ii) 성분 또는 분량(유효 성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본질 또는 제조 방법의 요지)이 허가 또는 신고된 내용과 다른 의약품</p>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9호(같은 법 제62조 제1 내지 3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하며, 같은 법 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법정형
(iii) 식약청장이 정한 제법·성상·성능·품질·저장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한 의약품 (iv) 의약품의 경우에 관련 규정을 준용함	함)	
(i) 식약청장 고시 규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	화장품법 제28조 제1항 제3호(같은 법 제13조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i)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 (ii)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운반·보존 또는 진열 (iii) 이미 허가 또는 신고된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위조·변조하거나 그 정을 알고 판매·취득·알선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와 이미 허가·신고된 식품 등의 위·변조 등 경우에 한함)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
(i) 주된 성분의 효능을 전혀 다른 성분의 효능으로 대체하거나 허가된 함량보다 현저히 부족하게 제조하거나, 그 정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판매를 알선하거나 또는 진료의 목적으로 구입 (ii) 이미 허가된 의약품 또는 화장품과 유사하게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정을 알고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판매를 알선하거나 또는 진료의 목적으로 구입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약사법 제62조 제2호에 위반한 경우와 이미 허가된 의약품등의 위·변조 등 경우에 한함)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

[제2유형]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법정형
(i)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료 또는 성분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 1. 마황 2. 부자 3. 천오 4. 초오 5. 백부자 6. 섬수 7. 백선희 8. 사리풀	식품위생법 제93조 제2항	1년 이상의 징역,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
(i) 위해식품 등, 병든 동물 고기 등,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진열 (ii)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 (iii) 집단급식소의 경우 관련규정을 준용함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2호(같은 법 제8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함)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i) 위해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운반·진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법정형
	조(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	
(i) 기립불능 가축을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 (ii) 썩은 것, 유독물질이 들어있는 것, 병원성미생물에 오염된 것 등의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7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i) 불결한 물질 또는 썩은 물질로 된, 병원 미생물에 오염된, 이물질이 섞여 있는, 식약청장이 정하지 아니한 타르색소가 사용된,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 또는 진열 (ii) 의약외품의 경우에 관련 규정을 준용함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9호(같은 법 제62조 제4 내지 7호, 제11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 같은 법 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i) 변질되거나 변패한 물질로 된, 병원미생물에 오염된, 이물이 혼입된, 식약청장이 정한 배합금지원료가 함유되었거나 배합허용한도를 초과하여 함유한, 식약청장이 정하지 아니한 타르색소가 사용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	화장품법 제28조 제1항 제3호(같은 법 제13조 제3 내지 7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i)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 (ii) 위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식품위생법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

[제3유형]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법정형
(i) 1. 소해면상뇌증(광우병), 2. 탄저병, 3. 가금 인플루엔자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	식품위생법 제93조 제1항	3년 이상의 징역,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

[제4유형]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법정형
(i)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 (ii) 의약품 또는 화장품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때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한함),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한함)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

[제5유형]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법정형
---------	---------	-----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법정형
(i) 2, 3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각 2, 3유형에서의 그것과 같음	
(ii) 4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3호(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한함), 제3조 제1항 제3호(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한함)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

3. 부정의료행위

[제1유형]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법정형
(i)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같은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함)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2유형]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법정형
(i)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치과 의사가 아닌 자가 치과 의료행위를,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부정의료업자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

[제3유형]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법정형
(i) 1, 2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각 1, 2유형에서의 그것과 같음	

[양형인자의 정의]

1. 허위표시

가.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 피고인이 피용자 또는 부하직원의 지위에서 회사나 영업주의 이익을 위해 수동적으로 범행에 참여하거나 범행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할 경우를 의미한다.

나.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 100% 외국산 쌀을 국산 쌀인 것처럼 판매하는 경우와 달리, 외국산 쌀과 국산 쌀을 혼합하여 국산 쌀인 것처럼 판매하거나, 실제로는 수입 고춧가루 50%와 국산 고춧가루 50%로 혼합한 고춧가루를 ‘수입 고춧가루 30%, 국산 고춧가루 70%’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 비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를 의미한다.

다.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

- 제조된 식품 등의 대부분이 제3자에게 점유·소유가 넘겨지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지배 하에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라.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유명 상품인 경우
- 백화점이나 전문 대리점 등 상대적으로 높은 공신력이 부여되는 장소에서 판매되는 상품인 경우
-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대규모 기업이 허위표시 등을 한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마. 실제 시중가격이 정상제품의 시중가격과 큰 차이가 있는 경우

○ 허위표시가 제거된 상태에서의 시중가격이 정상제품의 시중가격과 차이가 큰 경우를 의미한다.

바.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기망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포장시설 기타 자동화 설비, 인쇄된 라벨이나 포장지를 사용하여 범행한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사. 내부비리 고발

○ 구조적 비리에 가담해 온 피고인이 범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에서 내부비리를 고발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된 경우를 의미한다.

아. 동종 전과

○ 양형기준이 설정된 식품·보건범죄(허위표시 유형 범죄뿐만 아니라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유형 및 부정의료행위 유형의 범죄를 모두 포함한다)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

자.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지속적으로 무분별하게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지역의 산물이 부족한 경우에만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의 산물을 허위로 원산지 표시하여 판매한 경우
- 거래처에서 납품단가를 너무 낮게 책정하는 바람에 그 단가에 맞추기 위하여 허위표시 범죄를 범한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차. TV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경우

○ 이 경우 대중매체는 TV, 라디오, 신문, 잡지, 인터넷 사이트 등을 의미한다.

카.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실제로 영업을 개시한 후 단속될 때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2.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가. 허위서류나 위조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 법령에 의해 관할관청에 제출하거나 기록·보존하도록 되어 있는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를 위조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를 의미한다.

나. 유아·어린이용 식품 등인 경우

- 분유, 이유식, 어린이용 비타민, 어린이용 보습제 등 유아 또는 어린이의 건강과 성장에 관련된 식품·의약품·화장품을 의미한다.

다.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사람에게 해악을 가하거나 경제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 아닌 경우를 의미한다(예를 들면, 임상실험의 목적으로 의약품을 제조한 경우 등).

라.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실제로 영업을 개시한 후 단속될 때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3. 부정의료행위

가. 현대 의학상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환자측의 적극적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범행

- 현대 의학상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상태라고 함은, 말기 암, 심각한 뇌손상으로 인한 지속적 식물상태, 뇌사 등 현대 의료수준에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회복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환자측의 적극적 요구라고 함은, 환자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피고인에게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가 없음을 잘 알면서도 치료행위를 자발적·명시적으로 요구한 경우를 의미한다.

나.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의료행위

- 단순한 건강검진, 성병검사, DNA 검사와 같이 해석상으로는 의료행위에 포함되지만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행위로 볼 수 없거나, 뜸이나 수지침 등과 같이 신체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낮은 의료행위를 의미한다.

다. 환자측의 사전 승낙

- 환자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피고인에게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가 없음을 잘 알면서도 치료행위를 사전에 허락한 경우로서 적극적 요구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라.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실제로 영업을 개시한 후 단속될 때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마. 환자측의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무면허 의료행위의 상대방인 환자나 그 가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

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동종경합범 처리방법

- 허위표시 유형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처리방법을 적용한다.

- ① 허위로 표시된 식품 등의 판매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 ②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 허위표시 유형 외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아래의 '이종경합범 처리방법'의 예에 따른다.

4. 이중경합범 처리방법

- 이중경합범 및 허위표시 유형 외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다만, 허위표시 유형의 동종경합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허위표시 유형의 동종경합범에 대한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위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집행유예 기준]

1. 허위표시

구 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10년 이내) ○ 3유형인 경우 ○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 실제 시중가격이 정상제품의 시중가격과 큰 차이가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 1유형인 경우 ○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액수가 크지 않은 경우 ○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의약품·화장품에 해당하는 경우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TV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경우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발 후 바로 폐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급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2.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구 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10년 이내) ○ 유해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 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1억 원 이상 또는 의약품 등의 소매가격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 유아·어린이용 식품 등인 경우 ○ 중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거나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허위서류나 위조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 피해회복 노력 없음(상해·사망의 결과가 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발 후 바로 폐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 피해자측의 처벌불원, 상당금액 공탁, 진지한 피해회복 노력(상해·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 분	부정적	긍정적
	생한 경우)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부정의료행위

구 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동종 전과(10년 이내) ○ 2, 3유형인 경우 ○ 중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거나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2, 3유형)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을 사칭하는 등 환자측을 기망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	○ 현대 의학상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환자측의 적극적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범행 ○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 피해회복 노력 없음(상해·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자측의 처벌불원, 상당금액 공탁, 진지한 피해회복 노력(상해·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마약범죄 양형기준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 제2항, 제5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 제11호 내지 제13호, 제2항, 제6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제2항, 제6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7호, 제8호,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투약·단순소지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환각물질	- 8월	6월 - 1년	8월 - 1년6월
2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6월 - 10월	8월 - 1년6월	10월 - 2년
3	향정 나.목 및 다.목	6월 - 1년6월	10월 - 2년	1년 - 3년
4	마약, 향정 가.목 등	10월 - 2년	1년 - 3년	2년 - 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 양형 인자	행위	○소극 가담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행위자 /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 의사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2. 매매·알선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 8월	6월 - 1년4월	10월 - 2년
2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8월 - 1년6월	1년 - 2년	1년6월 - 4년
3	마약, 향정 가.목 등	2년6월 - 5년	4년 - 7년	5년 - 8년
4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5년 - 9년	7년 - 11년	9년 - 1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상습범인 경우(1, 2유형)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 양형 인자	행위	○소극 가담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행위자 /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3. 수출입·제조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향정 라.목 등	8월 - 1년6월	10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마, 향정 다.목	1년 - 3년	2년 - 4년	3년 - 6년
3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2년6월 - 5년	4년 - 7년	5년 - 8년
4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5년 - 9년	7년 - 11년	9년 - 1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상습범인 경우(1, 2유형)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 양형 인자	행위	○소극 가담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행위자 /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4. 대량범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제1유형	2년 - 4년	3년 - 6년	5년 - 8년
2	제2유형	3년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3	제3유형	6년 - 9년	8년 - 11년	10년 - 1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 양형 인자	행위	○소극 가담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행위자 /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유형의 정의]

1. 투약·단순소지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분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법정형
제1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각물질 ○ 섭취·흡입/같은 목적 소지 	○유해물질법 제58조 제3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제2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정 라.목 ○ 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처방전 발부 ○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약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마약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정 마.목 ○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마약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3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마 등 ○ 대마 재배·소지·소유·운반·보관·사용 ○ 대마·대마초 종자 꺾질 흡연·섭취/같은 목적 대마·대마초 종자·대마초 종자 꺾질 소지 ○ 대마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약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7호 ○마약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8호 ○마약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 원료식물, 마약 성분 함유 원료·종자·종묘 ○ 원료식물 재배, 원료·종자·종묘 소지·소유 	○마약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정 가.목 원료식물 ○ 원료식물 흡연·섭취/같은 목적 소지·소유 	○마약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2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습범 	○마약관리법 제61조 제2항	○1/2 가중
제3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정 나.목 ○ 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처방전 발부 ○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약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3호 ○마약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정 다.목 ○ 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처방전 발부 ○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약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3호 ○마약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습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약관리법 제60조 제2항 ○마약관리법 제61조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 가중 ○1/2 가중
제4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 ○ 소지·소유·관리·수수 ○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약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호 ○마약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년 이상 징역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아세틸모르핀, 염류, 함유물 ○ 소지·소유·관리·수수·운반·사용·투약·교부 	○마약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4호	○1년 이상 징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정 가.목 ○ 소지·소유·사용·관리 	○마약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6호	○1년 이상 징역

구분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법정형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마약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상습범	○마약관리법 제59조 제2항 ○마약관리법 제60조 2항	○3년 이상 징역 ○1/2 가중

2. 매매·알선 등

구분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법정형
제1유형	■ 환각물질 ○판매·제공	○유해물질법 제58조 제3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향정 라.목 ○매매·알선·수수·교부	○마약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대마 ○대마 수수 ○대마초종자·대마초종자 껍질 매매·알선	○마약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7호 ○마약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8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상습범	○마약관리법 제61조 제2항	○1/2 가중
제2유형	■ 향정 나.목 ○매매·알선·수수·교부	○마약관리법 제60조 제1항 3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향정 다.목 ○매매·알선·수수·교부	○마약관리법 제60조 제1항 3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대마 ○매매·알선/같은 목적 소지·소유	○마약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2호	○1년 이상 징역
	■ 마약 성분 함유 원료·종자·종묘 ○관리·수수·성분 추출	○마약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3호	○1년 이상 징역
	■ 마약, 향정 원료물질 ○제조 목적 매매·알선·수수/같은 목적 소지·소유·사용	○마약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5호	○1년 이상 징역
	■ 향정 가.목 원료식물 ○매매·알선·수수/같은 목적 소지·소유	○마약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7호	○1년 이상 징역
	■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범죄 ○수수·교부·흡연·섭취	○마약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3호	○1년 이상 징역
	■ 상습범	○마약관리법 제59조 제2항 ○마약관리법 제60조 2항	○3년 이상 징역 ○1/2 가중
제3유형	■ 마약 ○매매·알선/같은 목적 소지·소유 ※ 상습범은 제4유형에 포섭	○마약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향정 가.목 ○매매·알선·수수/같은 목적 소지·소유 ※ 상습범은 제4유형에 포섭	○마약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3호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향정 범죄 ○매매·수수·조제·투약·교부 ※ 상습범은 제4유형에 포섭	○마약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7호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제4유형	■ 마약, 향정 가.목 ○영리 목적 매매·알선·수수등/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조제·투약·교부 ○상습 매매·알선·수수등/미성	○마약관리법 제58조 제2항 ○마약관리법 제58조 제2항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구분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법정형
	년자에 대한 매매·수수·조제·투약·교부		
	■ 기타 향정 ○영리 목적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조제·투약·교부 ○상습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조제·투약·교부	○마약관리법 제58조 제2항 ○마약관리법 제58조 제2항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3. 수출입·제조 등

구분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법정형
제1유형	■ 마약 원료식물 ○수출입·매매·제조 목적 재배/같은 목적 그 성분 함유 원료·종자·종묘 소지·소유	○마약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호	○1년 이상 징역
	■ 대마초 ○대마의 수출·매매·제조 목적 대마초 재배	○마약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1호	○1년 이상 징역
	■ 향정 라.목 ○수출입·제조/같은 목적 소지·소유	○마약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4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상습범	○마약관리법 제59조 제2항 ○마약관리법 제60조 2항	○3년 이상 징역 ○1/2 가중
제2유형	■ 대마 ○수출입/같은 목적 소지·소유 ※ 상습범은 제4유형에 포섭 ○제조/같은 목적 소지·소유	○마약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5호 ○마약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2호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향정 다.목 ○수출입·제조/같은 목적 소지·소유	○마약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8호	○1년 이상 징역
	■ 상습범	○마약관리법 제59조 제2항	○3년 이상 징역
제3유형	■ 마약 ○수출입·제조/같은 목적 소지·소유 ※ 상습범은 제4유형에 포섭	○마약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향정 가.목 ○수출입·제조/같은 목적 소지·소유 ○원료식물 성분 추출/수출입/같은 목적 소지·소유 ※ 상습범은 제4유형에 포섭	○마약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3호 ○마약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4호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향정 나.목 ○수출입·제조/같은 목적 소지·소유 ※ 상습범은 제4유형에 포섭	○마약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6호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마약, 향정 원료물질 ○마약, 향정 제조 목적 원료물질 수출입·제조/같은 목적 원료물질 소지·소유 ※ 상습범은 제4유형에 포섭	○마약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2호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구분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법정형
제4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 향정 가.목, 나.목, 대마, 마약 및 향정 원료물질 ○ 영리 목적 수출입·제조등 ○ 상습 수출입·제조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관리법 제58조 제2항 ○ 마약관리법 제58조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4. 대량범

구분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법정형
제1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제60조 제1항, 제2항의 마약, 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특가법 제11조 제2항 제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가법 제11조 제2항 제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제2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제60조 제1항, 제2항의 마약, 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특가법 제11조 제2항 제2호) ■ 마약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가법 제11조 제2항 제2호 ○ 마약관리법 제58조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제3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제60조 제1항, 제2항의 마약, 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0만원 이상(특가법 제11조 제2항 제1호) ■ 마약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0만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가법 제11조 제2항 제1호 ○ 마약관리법 제58조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양형인자의 정의]

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인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교부하거나 몰래 음식물에 타서 먹인 경우
- 타인에 대한 보복, 원한 또는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중요한 수사협조

○ 피고인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마약범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밝혀 관련자들이 형사소추되거나 형사소추가 가능할 정도로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마약범죄 유형과 비교하여, ① 더 무거운 유형의 범죄 또는 ② 동일한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다수인의 범죄 또는 범죄행위의 단계·마약류의 양·횟수·기간 등에 있어서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
- 매매·알선 등 유형의 제4유형, 수출입·제조 등 유형의 제4유형 또는 대량범 유형의 제3유형에 해당하는 범죄
- 다만, 피고인이 ‘수사협조’ 양형인자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마약범죄를 유발하면서 이를 수사기관에 밝힌 경우는 위 양형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마.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 당해 마약범행 적발 이전부터 확실한 치료의지가 있었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중독 증상에 대한 치료요법을 자발적·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를 의미한다.

바. 일반적 수사협조

- ‘중요한 수사협조’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수사협조를 의미한다.
- 다만, 피고인이 ‘수사협조’ 양형인자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마약범죄를 유발하면서 이를 수사기관에 밝힌 경우는 위 양형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또는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범행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아. 상습범인 경우(1, 2유형)

- 매매·알선 등 유형 및 수출입·제조 등 유형의 제1, 2유형 해당 행위로서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수출입·제조 등 유형의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해당 행위 중 대마 수출입 또는 같은 목적 소지·소유행위(마약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5호)의 상습범(같은 조 제2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범죄 ○ 상습범인 경우 ○ 대량범인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중요한 수사협조 ○ 자수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일반적 수사협조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투약·단순소지 유형)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